

17.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 유학생’ (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이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 및 교류협정을 통해 방문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본 규정은 모든 유학생(대학원생 포함)에게 적용된다.

② 어학·단기 연수 및 단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학생의 관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입학 자격 및 주관부서

제4조(입학 자격) ①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다음 각호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졸업 예정) 이상의 학력 소유자 또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기타 법령에 따라 대학 입학 능력이 인정된 자
2.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소지자 또는 3급 이상 소지자(2급 소지자는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 연수 필수 이수(단, 입학 전 1년 내 대학에서 지정한 온·오프라인 한국어 강좌 이수시 최대 20시간 까지 필수 이수시간으로 인정 가능)>
3. 당해 모집 요강에 기재된 지원 자격을 갖춘 자

② 교류협정에 따른 외국인 학생은 본교와 교류대학 간 협약에 따른다.

제5조(입학관리 및 주관부서) ① 입학관리는 학부의 경우 교무입학처 입학관리과에서 주관하고 대학원은 대학원에서 주관한다.

② 입학 관리 외의 업무는 학부는 가톨릭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고 대학원과정은 대학원에서 주관하며 담당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 안전, 상담 및 출입국 업무에 대한 관리
2. 모집 및 홍보 입학 지원
3. 출입국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지도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을 관리 한다.

제3장 유학생 관리

제6조(학사) 유학생의 수업, 성적, 학적 등 학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등록금 및 장학금) ① 입학이 허가된 유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학생은 본교 장학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입국지도) 입학이 허가됨과 동시에 표준입학허가서와 입국 관련 자료 등 입학에 필요

한 자료를 학부는 교무입학처 입학관리과, 대학원은 대학원에서 학생에게 발송한다.

제9조(학생상담) 주관부서는 유학생들의 적응 및 학업 지도에 관하여 소속 학과 및 지도교수와 상담을 지원하며, 필요시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

제4장 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및 출입국

제10조(담당자 지정)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담당자는 학부는 가톨릭국제교육원 소속 직원으로, 대학원은 대학원 소속 직원으로 지정한다.

제11조(현황 통보 및 변동 신고) ① 유학생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지침에 기초하여 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 현황을 매년4회(2월, 5월, 8월, 11월) 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유학생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학생 정보시스템 지침에 기초하여 변동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휴학한 경우
2. 재적·연수 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경우
3.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
4.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장 생활 및 안전관리

제12조(보험) 유학생은 기타 질병 및 상해 사고를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 또는 질병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유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의료지원) 유학생의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위기관리) ① 유학생의 사적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교의 학칙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징계처분 또는 강제출국 요청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상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유학생 등이 성희롱, 성폭력 등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는 학생생활상담센터와 협조하여 관리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발행하는 경우 본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한다.

제6장 기타

제15조(TOPIK, 한국어능력시험) ① 유학생은 졸업 전에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해당 학생에게 관련 사항을 반드시 안내한다.

제16조(기숙사) 유학생에게는 기숙사 입사를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입사 시에는 기숙사의 해당 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시행 규정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